

건축정책위원회 운영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								
사업위치											
총사업비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right;">총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(국비)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(시비)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(보조율)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(구비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 %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총	(국비)	(시비)	(보조율)	(구비)				0 %	
총	(국비)	(시비)	(보조율)	(구비)							
			0 %								
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의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, 시행에 관한 사항 -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-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-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-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-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○ 자문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(가로, 공원, 광장, 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)의 발주에 관한 사항 -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, 도시개발사업, 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,000㎡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-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(단, 부지면적이 5,000㎡미만인 경우 제외) -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										
사업형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			
사업시행주체											

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자방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경상	투자				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도시공간개선단		안재혁 2133-7640	한병준 2133-7602	최태훈 2133-7604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	(x-)
계	(x-)	(x-) 31,800	(x-) 40,272	(x-) 8,472	(x-) 26
사무관리비	(x-)	(x-) 28,800	(x-) 39,072	(x-) 10,272	(x-) 35
시책추진업무추진비	(x-)	(x-) 3,000	(x-) 1,200	(x-) △1,800	(x-) △60

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사무관리비	○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39,072,000원*1식 = 39,072천원
	- 본위원회 심의 등 수당 170,000*15명*12월*0.8 = 24,480천원
	- 분과위원회 심의 등 수당 170,000*2개분과*3명*12월*0.8 = 9,792천원
	- 속기사 수당 200,000원*2시간*12회 = 4,800천원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,200,000*1식 = 1,200천원

3 사 업 설 명

- 사업목적**
 - 건축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에 의거한 건축정책위원회 운영
- 사업근거**
 - 법령상 근거
 - 「건축기본법」 제18조
 - 「서울특별시건축기본조례」 제9조
- 사업내용**
 - 심의대상
 -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, 시행에 관한 사항
 -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
 -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
 -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 -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
 -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
 - 자문대상
 -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(가로, 공원, 광장, 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)의 발주에 관한 사항
 -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, 도시개발사업, 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,000㎡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
 -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(단, 부지면적이 5,000㎡미만인 경우 제외)
 -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- 추진경위**
 - 2013년 11회 개최, 2014년 12회 개최, 2015년 11회 개최
-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**
 - 새로운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공간구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으로 서울의 도시 및 건축의 문화경쟁력 향상
- 사업추진절차**
 - 각 부서에서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(자문) 신청하여 위원회 개최

□ 2017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0	
건축정책위원회 운영	2017.01~2017.12		건축정책위원회 운영,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등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4년도	○ 위원회 개최수 : 12회, 위원회 안건수 : 58건
2015년도	○ 위원회 개최수 : 11회, 위원회 안건수 : 52건
2016년도	○ 위원회 개최수 : 9회, 위원회 안건수 : 46건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서울시 건축물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중요 정책 수립 기여
-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
-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

5 최근 3년 결산 현황